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44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이미림
주거 안양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이하생략
검 사 조00(기소), 권00(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구00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자녀 조△△와 피해아동 박○○는 00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24. 3. 20.경 위 학교 도서관에서 다툼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3. 21. 오전경 00초등학교 1층에 있는 1학년 3반 교실 앞 복도에서 담임교사를 통하여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아동을 복도로 불러내 ‘왜 △△의 머리

를 3대 때렸냐, 여자애를 때리면 어떻게 하나, 거짓말하지 마라.’는 등의 말로 피해아동을 다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교실을 찾아간 것은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으며,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를 만나서 피해아동이 전날 자신의 자녀를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담임교사가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와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아동과의 대화는 자제하고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와 주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피해아동을 찾아갔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교 수업시간 중 피해아동을 찾아가 피해아동을 복도로 불러냈다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였던 정○○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2교시 수업이 거의 끝날 무렵인 10:20경 내지 10:25경 피고인이 교실 앞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아동을 지칭하다. 이하 같다) 어딴어, ○○가 누구야”라고 비교적 큰 소리로 말했고, 반 학생들이 놀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과 1학년 3반 바로 앞 복도에서 이야기했다. 자신은 교실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복도로 나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 내지 49쪽), 피해아동이 참석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1학년 3반 교실 뒷문 쪽 복도에 있는 것을 보았고 담임 선생님께서 나오라고 하셔서 복도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조△△의 얼굴을 세 번 때린 이유를 물어봐서 때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55쪽), ② 이 사건 당일 등하교 알리미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녀 조△△는 09:38경 정문을 통과하여 등교하였으며, 조△△의 동생 조◇◇는 10:24경 어린이집 현관으로 등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00쪽), 조△△ 및 조◇◇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인 피고인이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조△△를 1학년 2반에 등교 시킨 이후 3반까지의 이동 시간, 학교를 나온 후 어린이집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9:40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 동안에만 피해아동의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③ 정○○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교시 수업시간이 마치기 전에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의 담임교사도 조△△의 엄마인 피고인이 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내려오는 길에 우리 교실에 들렀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2반 교실로 가자 피고인이 온 것을 이미 알고 조△△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64쪽), 정○○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가 등교한 직후인 09:40경 피해아동의 교실인 3반에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정○○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점, ④ 정○○는 피고인이 교실로 들어온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실에 있다 먼저 나갔고, 자신이 피해아동에게 “○○야 이리 와봐.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고 같이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동, 즉 교실로 들어온 후 담임교사의 교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복도로 나갔다는

점은 수업중인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와 큰소리로 피해아동을 찾았던 사람으로서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1학년 2반의 교사이자 조△△의 담임교사인 양○○는 법정에서 '2교시 수업시간이 09:50부터 10:30까지인데, 2교시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정○○와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양○○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교시 수업 시작 이전에 피해아동의 교실에 방문한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피해아동을 복도로 불러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날 피해아동이 자신의 자녀 조△△를 때렸는데

이 사실을 피해아동의 담임이 피해아동의 어머니께 알리지 않아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전혀 모르고 있어 피해아동의 담임에게 피해아동의 어머니께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물어 보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피해아동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정○○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선생님도 잘 못하셨다. 왜 피해아동의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9쪽),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조△△를 때린 일에 대해서 피해아동의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하는 참이었는데 피고인이 온 것이다. 피해아동의 엄마하고는 통화를 안 했었는데 피고인이 다녀간 다음에 쉬는 시간에 피해아동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정○○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정○○는 이 사건 전날 피해아동이 조△△를 폭행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까지는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피해아동의 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학교로 찾아와 피해아동의 담임에게 그 이유를 확인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만나러 3번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담임에게 피해아동의 폭행 사실을 피해아동의 어머니께 알리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여자애를 주먹으로 때리면 어떻게 해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고, 큰소리로 쏘아붙이거나 다그친 정도는 아니다. 조금 화가나 말하긴 했다. 피해아동이 조△△와 만나 사과할 때 조△△아에게 미안해라고 말해서 자신이 피해아동에게 더 크게 말해봐라고 하자 피해아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조△△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구나라고 말하자 피해아동이 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6, 269쪽), 법정에서는 '자

신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복도로 나갔고, 피해아동에게 “○○야, △△(피고인의 자녀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엄마가 네가 △△를 때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오셨나 봐”라고 하면서 “이렇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드려”라고 했다. 그러니까 피해아동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자신이 재차 “얼른 사과드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 직접 △△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아동과 피고인과 함께 1학년 1반 교실로 올라갔다. ‘피해아동을 복도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자신이 피해아동에게 “△△어머니께 빨리 사과드려. △△ 때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라고 하니 까 피고인이 “선생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가 저한테 사과해요? △△한테 사과해야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조△△의 담임교사인 양○○는 법정에서 ‘피고인, 정○○, 피해아동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피고인은 이야기할 때 피해아동에게 본인을 “이모”라고 표현을 했다. “이모가”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하는 과정을 잘 이끌어내려고 했다. 3반 담임선생님 정○○도 같이 말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너, 빨리 사과해” 약간 이런 식의 말도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피해아동이 약간 미안하다는 식으로 했고, 나중에는 안 미안하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많이 속상해 했고, 그냥 교무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아동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얘기를 했을 때 목소리 크기는 중간정도였다. 무섭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1내지 49쪽), 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학교를 방문한 주된 이유가 이 사건 전날 발생한 피해아동의 자신의 자녀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복, 협박, 모욕, 위협 등의 목적이 아니라 폭행사실에 대한 피해아동 담임의 피해아동 보호자에 대한 미고지 이유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의 동석 하에 피해아동과 대화하였으며, 그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대화한 주된 내용은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자녀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것이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사과 요구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대화하는 도중 신체접촉이나 욕설 및 겁박뿐만 아니라 반복적 추궁이나 장시간에 걸친 혼계조차 없었던 것을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이모’라는 비교적 친근한 호칭을 유지하고, 교실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지 않기 위해 복도에서 대화를 유도하는 등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폭행한 피해아동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자녀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한 자녀의 보호자로서 폭행 가해 학생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의 사실 확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아동이 결국 자신의 피고인 자녀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더 이상 피해아동을 추궁하기 위하여 대화를 계속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 _____